

가봉 (Gabon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7.5%	7.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1,500,000 / 150,000 CFA francs	1,500,000 / 150,000 CFA francs	-
당연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 및 자영자	당연적용대상 확대
연금수급 개시 연령	55세	55세	-
일시금	노령 및 유족 일시금 제도 有	노령 및 유족 일시금 제도 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3년(연금), 1978년(사회보장), 1983년(사회보호)
- 현행법 : 1975년(사회보장), 1976년(적용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 - ※ 2017년 제정된 사회보호법(Social Protection Code) 향후 시행 시에는 당연적용 대상에 자영자도 포함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(가정 근로자 포함)
- 특별제도 : 자영자 및 국가 공무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가입 소득의 2.5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(월 150,000 CFA francs)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1,500,000 CFA francs
- 자영자 : 해당 없음
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액의 5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(월 150,000 CFA francs)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1,500,000 CFA francs

- 정부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 : 55세 도달(조로(早老)의 경우, 50세), 최종 20년 내 120개월 이상(추납가능) 포함 가입기간이 20년 이상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연금의 국외지급은 상호 협정에 따라 가능
 - 가봉에서 영구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납부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음
 - 노령청산금(Old-age Settlement) : 55세 도달(조로(早老)의 경우, 50세)하였으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
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 : 통상 퇴직연령(수급연령) 미만이어야 하며, 소득활동 능력 상실로 판정되고 가입기간 5년 이상(장애발생 직전 5년 중 30개월 이상 포함)
 - 의료위원회가 소득활동 능력 상실 판단
 - ※ 장애가 산업재해(출퇴근 포함)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요건 면제
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 :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및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었던 경우 (추납포함)
 - 수급가능 유족은 미망인, 피부양자, 장애를 가진 홀아비 및 16세 미만의 고아 포함 (견습생의 경우 17세 미만, 학생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20세 미만)
 - ※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할 경우 정지됨

- 유족청산금 :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으며,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 경우 (추납포함)
 - 수급가능 유족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미망인이나 피부양자, 장애를 가진 홀아비 및 16세 미만의 고아 포함 (견습생의 경우 17세 미만, 학생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20세 미만)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 : 최종 고용기간(3년 또는 5년 중 높은 쪽) 중 가입자 월평균 가입소득의 40% + 240개월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마다 1%씩 증액
 - 최저연금액 : 법정 최저임금(월 150,000 CFA francs)의 80%
 - 연금급여는 분기별 지급
 - 연금의 국외지급은 상호 협정에 따라 가능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계비와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정(단, 재원 수준 고려)
- 노령청산금 : 납부기간 6개월마다 최종 고용기간(3년 또는 5년 중 높은 쪽) 중 가입자 월평균 가입소득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 : 가입자가 55세까지 근로하였을 시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액의 60%
 -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
 - 최저연금액 : 법정 최저임금(월 150,000 CFA francs)의 60%
 - 완전장애는 매월 지급, 75% 이상 100% 미만 장애는 신청에 따라 매월 지급 가능, 그 외에는 분기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계비와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장관시행령으로 조정(단, 재원 수준 고려)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 유족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액의 50%(유족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 지급)
- 고아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액의 20%를 수급권 있는 각 고아에게 지급 (단, 고아의 어머니가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35%)
 - 최고연금액 : 합산된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자 노령연금액의 85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연금급여는 분기별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계비와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장관시행령으로 조정(단, 재원 수준 고려)
- 유족청산금 : 사망자가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을 노령연금액의 1개월분 급여액 x (실제 가입기간 6개월 당 1개월의 승수)를 유족배우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(유족 배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 지급)

- 사회개발 및 가족, 사회보험, 국민통합부 (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Family,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Solidarity)
 - 전반적인 관리.감독
 - <http://www.prevoyance-sociale.gouv.ga>

- 국가사회보장금고 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3자 위원회 및 사무총장 관리 하에 보험료 및 급여 관리
 - <http://www.cnss.ga>

<2019년 ISSA 자료>